

폐가전이 다른 데에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묶는다든지 그런 인력적인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게 뒤의 첨부에, 무상방문수거 협약서 안에 동일한 문구를 같이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너무 구체적이기는 하네요.

○임이자 위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나 봐.

○이상돈 위원 법의 1·2·3·4조와 같은 그 위에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넣으면 법이 구질 구질해진다고.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께서.

○소위원장 한정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늘 여기 답변하신 환경부 관계자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설훈 위원 아니 아니에요,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집하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소위원장 한정애 기존에 이미 회수 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설훈 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소위원장 한정애 예, 다 되어 있어서, 다만 지자체 책무만 정확하게 정리되는……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업무만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설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가 봅시다.

의사일정 제3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38항까지, 61쪽부터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문진국 의원님 그리고 박인숙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별도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요. 전문위원님, 조문별 검토 내용을 듣고 이 설명을 들을까요?

○전문위원 송주아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이외에서 소비할 목적이거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차이는 문진국 의원님 안 1번과 박인숙 의원님 안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항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의원님 안 2는 현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 관련된 조항인 15조의2에 규정하면서 표준용기 지정,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처리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좀 다릅니다. 일회용 컵에 관한 부분인지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요. 문진국 의원님께서도 당초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항에 넣었다가 빈용기 보증금으로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하셔서 새로 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안 위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 도입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일반소비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에 도입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문진국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여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정부 측에서 컵 보증금 제도 관련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자료를 보시면 1쪽의 배경

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른바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일회용품의 문제, 일회용 컵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1년에 60억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점 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저희들 정책 중의 하나로 있었던 것이 컵 보증금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컵 보증금 제도는 02년부터 08년까지 저희들이 운용을 했었는데 그때 최대 회수율은 38%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규제 완화 차원 등으로 동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현재하고 그때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02~08년도에는 소비자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문점이나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곳이나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물론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과거와 똑같은 한 100원 이내에서 정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도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내에 전체 수거를 하는 비용으로, 위탁을 하는 비용으로 1만 원에서 1만 원 이내면 한 달이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점별 수거 체계를 마련해서 컵 보관 등 재활용 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 법은 최근에 환경부가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하면서 과징금 부과하는 정책 이전에 발의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에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보증금을 내면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가는 시그널을 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책의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거기에 근거하는 법을, 현재 법이 없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제가 최근에 커피숍에 가면 유심히 보는데 일회용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일회용 컵을 도로 사용해야 하는 시그널을 주는 법이 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4시에 끝낸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일반국민과 관련 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 폐기물 정책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상 2002년에서 2008년까지 한 것의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고. 이것은 소비자가 정부를 이긴 겁니다. 규제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지 누가 그런 것 갖다…… 그때 커피점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대 민원사항이 50원 없애는 것이었다고, 소비자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별안간 요새 폐기물 문제가 생겼다고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전체 폐기물에서 일회용 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종이로 만든 것 가지고 시비 거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이로 시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예요.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커피숍에서 나가는 것은 라테 먹고 해서 더럽지만 이것은 깨끗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것은 굉장히…… 그리고 일반국민들한테 너무 크고 이것은 일반국민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고요.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가 이것 허용할 때, 유리병이냐 이것이냐 할 때 뭘 했습니까? 전 주기 분석했잖아요. 이번에 커피숍 전 주기 분석했어?

○환경부차관 박천규 아직 그것까지는 전 주기 못 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도 시행하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회용 컵이 환경에 부하가 적다는 거야. 왜냐 그러면 컵 일일이 모아서 전기 쓰고 세제 쓰고 세

제 쓴 물 다시 정화하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종이컵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 플라스틱 컵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좀 다른데.

그리고 여기 입법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 도시 미관 훼손 및 위생 문제라는데 그러면 일회용 컵을 갖다가 버스정류장에 만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컵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범범이잖아, 쓰레기 투기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단속해야지. 그리고 전체 일반소비자 중에서 버스정류장이든 거리에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전 국민을 규제합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는 법이야,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임이자 위원** 어쨌든 맥락은 다르지만 두 분은 반대네요?

○**이상돈 위원** 그리고 커피숍에서 머그잔 강제로 쓰는 것 그것은 벌금 못 매깁니다, 좀 있으면 반란 일어날 거야. 더군다나 요새 중소기업들 쥐어짜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현희 위원** 환경부가 일회용 컵 폐기 정책을 커피숍이나 이런 데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회용 컵 쓰게 해 줄게. 다만 돈 50원 내면 쓰게 해 줄게’ 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도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매기는 것을 하려면 테이크아웃 해서 외부로 가져간 컵을 가져올 때 그것은 보증금을 주겠다 그러면 논리적 일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커피숍에서는 여진히 못 쓰게 하면서 외부로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한해서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법이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이상돈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라테이니 뭐니 사교서 업체에서……

○**소위원장 한정애** 담당 과장입니까?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돈 위원** 아니, 내가 얘기 좀 더 하자고.

라테고 카푸치노고 이런 것 먹게 되면 그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에 오면 거기에서 그냥 폐기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누가 씻어서 가지고 갑니까, 커피숍에다가? 그리고

그게 위생적입니까? 더럽잖아. 박테리아하고 이런 것 비위생적인데 그것을 모아서…… 커피숍에서 장사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지. 이런 법률을 갖다가 낸다는 것은 나는 상식에 어긋나. 이런 것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매장 내에서 금지하는 것과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매장 안에서 쓰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증금을 부여하는 것은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부과를 하고 환급할 때에 보증금을 반납한다는 그런 제도 설계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매장 안에서 분리·선별된 플라스틱 컵, 종이컵들은 재활용 전문 수거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량 재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컵들이 매장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매장 내에서 분리·선별해서 전량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종이컵과 커피전문점에 있는 종이컵은 다릅니다. 커피전문점에 있는 종이컵은 안에 코팅이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야지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매장 안에도, 컵이 돌아올 수 있게만 하면 현재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이나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현희 위원** 법의 어디에 테이크아웃에 적용된다고, 법에 그 규정이 어디 있나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이병화** 현재 여기 문진국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하신, 10조에서는 사용 억제 조항이고요 15조에서는 그것을 빈용기 보증금……

○**전현희 위원** 몇 조 몇 항이요? 이 법이, 그러니까 보증금이 테이크아웃, 매장 내가 아니라 외부에 반출된 컵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이병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금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요. 팔호 해

서 '다만, 매장 외로 가져가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15조에서 보증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0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테이크아웃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

○**전현희 위원** 전혀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처음에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런 내용으로 전혀 설명 안 했잖아요? 마치 과거에 매장에서 1회용 컵을 할 때 보증금 했던 것을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도 설명을 이해 못 하고 있고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지적하니까 이것은 외부에 나가는 컵에 적용이 된다, 그런데 법도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게 법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이상돈 위원** 나중에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펄프도 다 좋은데 예를 들면 우유팩 같은 것도 잘 모으면 버릴 때도 되지 만…… 그러면 우유팩에도 돈을 매겨서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것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재생 목적으로 수입하는 파지가 전체 재활용하는 파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국산 파지를 얼마나 쓰고, 좀 좋은 종이 말이예요, 비중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잖아? 백상지 수입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박천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얼마나 수입해요, 전체에서?

○**환경부자원재활용과장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전체 15%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유한킴벌리나 화장지 업체가 쓰는 것은 대부분 그것 아닌가요?

○**환경부자원재활용과장 최민지** 예, 맞습니다.

○**이상돈 위원** 고급용은 다 수입을 하잖아요?

○**환경부자원재활용과장 최민지** 예.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 고급용 용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다 모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자원재활용과장 최민지** 예.

○**이상돈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피스나 학

교에서 이것을 별도로 모으는 게 지금까지도 안 돼 있잖아요. 30년 전에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것에 비해서는……

왜 1회용 컵 같은 것을 상대 타깃을 해서 마치 모든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고? 전체 종이 폐기물 이런 것을 봤더니 굉장히 치졸한 거예요, 이것.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 일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씻어 갖고 오라 그러면 그것 50원 받겠다고 몇 개 갖고 올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가정에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컵을 별도로 하든가 우유팩을 별도로 모으면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모으든가?

○**임이자 위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상돈 위원** 나는 절대로 이게 더 나쁘다고. 더 안 된다고. 더군다나 영업하는 집은 이것을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겠는데 거기서 그것을 갖다 돈하고, 더군다나 이걸 무슨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관료적인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설훈 위원** 이게 1회용품 컵을 사용 자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일종의 유행 같은데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이것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편리성이나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자제해서 쓰자, 적게 쓰자 이런 취지일진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뒤 가지고 하게 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캠페인 정도로서 만족하고 넘어가야지 법적으로 장치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이것 하나당 50원이다, 가져오면 50원 준다, 효과가 있을까?

○**임이자 위원** 오히려 귀찮지.

○**설훈 위원** 유리병의 경우에는 가능해요. 유리병은 지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가능하는데, 종이컵에 대해서 일인당 50원 줄 테니까 다시 수거해서 가지고 오나라 하면 이게 5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한 500원쯤 된다면 하겠지. 그런데……

○**임이자 위원** 종이컵이 50원 안 되지 않나요?

○**이상돈 위원** 그때 50원씩……

○**소위원장 한정애** 50원 정도 될 겁니다, 되게

좋아서. 커피숍에서 쓰는 종이컵은 두껍고 잘 풀 어지지 않고……

○**설훈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얼마였든 간에 그러면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돈을 줄 테니까 다시 수거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수거업자 아니고는 이것을 할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소위원장 한정애** 자, 위원님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손을 봐야지 이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참 짧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위원장 한정애** 환경부가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해 주세요. 첫 번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게 할 것이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그냥 1회용품 다 쓰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냥 플라스틱에만 집중하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피숍이 머그잔 쓰는 게 어려워지니까 1회용 종이컵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1회용 종이컵을 다 가지고 앉아서 마시고 있어요, 플라스틱만 안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선적으로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는 게 주목적이면,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1회용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차라리 그러면 매장 안에서 종이컵으로 먹고 종이컵을 매장 안에 두고 가는 게 나은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돈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환경에 더 나쁜가가…… 정교하게 분석도 안 하고 한 것 아니야.

○**소위원장 한정애** 양쪽 다룰 하실 겁니까? 플라스틱도 줄이고 1회용 종이컵도 어쨌든 줄이겠다. 그래서 플라스틱이건 종이컵이건 다 밖에 나갔다가 모아 가지고 오면 어쨌든 50원씩 다 준다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그것인 거지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장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은 지금 현재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컵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종이컵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1회용품 금지를 시키고, 다만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컵에 대해서는 그게 플라스틱

컵이든 종이컵이든 나간 컵이 다시 매장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매장 밖으로 나간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은 분별 회수, 선별해서 회수되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 전량 100%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금을 통해서 매장 안으로만 돌아오게 하면 저희들이 전량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EU나 주요 북미 국가들이나 미국의 10개 주에서도 페트병에 대해서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여기에 우리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보증금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페트병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은 웬만해서 가정에서 많이 분리 선별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보다는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에 대해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주는 아이스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 커피를 먹었다, 이 가게에서 먹은 거다라고 하는 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이라서. 그러면 A커피숍에 가서 사서 먹고 내가 갖다 줄 때는 B에다가, 그러니까 전혀 상호가 다른 데 가서 줘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훨씬 수월하긴 하겠네요.

○**설훈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잔을 하나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해 왔다가 다시 사러 갈 때 반환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상돈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설훈 위원** 그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종이컵 하나를 들고 가서 또 어디서 살 때 종이컵 반납하고 사겠느냐고요, 이게.

○**이상돈 위원** 그것은 일반 국민의……

○**임이자 위원**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플라스틱이 나온 만큼은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그것만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 생길 테고 그것만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소위원장 한정애** 나쁘진 않네요.

○**임이자 위원** 왜? 병보다 더, 50원이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그것을 갖고 오면 또 매장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 줘야 되니까 더 비위생적으로 돼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쁘다 이거지.

○**이상돈 위원**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관료의 오만과 독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야. 이것은 그만합시다.

○**소위원장 한정애** 계속 논의해야 되겠네요.

○**설훈 위원** 아니, 지금 국장인 것 같은데 이게 순환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상상력의 부족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가져와요? 내가 가서 한 잔 먹고 그것 버리지. 그것은 아무리 계도를 시키더라도, 법을 가지고 강제하더라도 안 돼요. 내 의식의 하에서 돌아온다면, 이것은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 놔다가 돌아갈 때 다시 가져가야지 이런 정도의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강제하고 50원이 아니라 500원을 준다 하더라도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다시 반납해서 그것을 쓰겠느냐고?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법 만드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예 종이컵과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해야지요, 다 텀블러 갖고 다녀라 이렇게.

○**이상돈 위원** 텀블러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것을 갖고 다니라고……

○**소위원장 한정애** 안 씻으세요? 씻어서 쓰셔야 됩니다.

○**이상돈 위원** 씻어 봤자 그게 박테리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뜨거운 불에 열풍 건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디서 그런 비위생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소위원장 한정애** 자,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자체에서

는 그것을 아예 전량 소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는 게 그것을 보관했다가 카페로 다시 가져가는 유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은 플라스틱컵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먼저 살리려면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의 재활용을 용이하게끔 우선 그것부터 먼저 규제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코팅하고 뭐 해 가지고 다 소각하지 분리 선별이 안 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선 그게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컵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소각 안 하고 재활용과 선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모든 말씀에 다 공감하는 게, 그것을 누가 보관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겠습니까? 그 유인은 전혀 없을 거다. 우선은 선별이 가능하고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지금도 물병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재활용 선별 제대로 안 되게끔 포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의사일정 제39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101쪽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강수계위의 위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산림청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벌채 등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통합적 운영과 농경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수계위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계위 구성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